

##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제3차 회의결과

### 1. 회의개요

□ 일 시 : ’06년 9월 13일(수), 16:30~18:30

□ 장 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회의실 (알파빌딩 13층)

□ 참 석

#### ○ 정 부

- 위원회 : 차별시정비서관 황덕순, 차별시정위원회 과장 남찬섭, 차별시정위원회 연구원 김소영 (3명)
- 부 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이유훈, 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김강립, 국조실 복지정책과장 민용기,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사무관 이병성, 건교부 도시교통팀 사무관 이상주,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박민정, 재경부 복지경제과 사무관 나운정, 산자부 산업혁신팀 사무관 강호상, 여가부 복지지원팀 사무관 최만기, 정통부 정보문화팀장 이상학, 문광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전국은 (11명)
- 옵저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장 정영선 (1명)

○ 장애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김동범, 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장명숙, 시각장애인연합회 김두현 대외협력실장, 장추련 법제위 부위원장 김광이, 법제위원 유동철(동의대 교수), 법제위원 염형국(변호사), 법제위원 김철환, 법제위원 김주영(국립재활복지대학 교수), 법제위원 배용호(장애인편의시설 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 장추련 사무국장 박옥순 (10명)

### 2. 회의결과

□ 회의 안건 : 장차법안 제7~29조 내용이 기존 법률과 중복 내지 상충하는 부분 및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토론

#### ○ 정부의견

- 장차법안의 각 영역 세부 내용은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 특수교육진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 중복되는 부분을 유지하고 장차법을 제정할 경우, 문제발생 우려 (어느 법을 따를 것인지, 기존 법은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 등)
  - 장차법안에는 기본법적 개념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그 곳에 담는 것이 옳다고 봄
- 장애계 의견
- 기존 법률은 지원법의 성격이 있는 반면 장차법안은 권리구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목적 자체가 다름
  - 기존 법률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기존 법률에서 지원이나 규제를 한다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다소간 중복되는 듯이 보이더라도 장차법안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복되는 부분의 조정에 있어서 기존 법률에 강구조항 (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이나 임의조항으로 된 부분과 중복되는 것을 장차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원법적 성격을 갖는 기존 법률에서도 권리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나 그 것은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내용에 한해서이지 개별 장애인의 차별현실 하나하나에 관한 것은 아님. 이런 점에서 장차법안의 내용이 기존 법률과 반드시 중복된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 다음 회의 안건

- 제4차 회의에서는 장차법안 별도 입법여부에 관련하여 장애계와 정부 간의 일차적인 입장정리를 함. 이를 위해
  - 장애계는 기존 법률을 가능한 최대치로 수정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전제로 기존 법률과 장차법안을 각기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검토안을 만들어 오고
  - 부처는 장애계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장차법안의 내용 및 기존 법률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부처별 검토안을 만들어오기 바람
- 제4차 회의 일정 : 2006년 9월 27일(수) 오후 4시

## □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